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0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희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강승규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조정위원회”를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